

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일부개정(안)

2025. 09

수 협 중 앙 회

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일부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- 어선 안전 관련 법정 준수 의무사항 반영
- 안전저해 등 보험사고 위험 행위에 대한 제도 강화

2. 주요내용

- 어선 안전 관련 법정 의무 사항 반영
 - 구명조끼 착용, 위치통지, 출입항 신고, 어선검사, 음주·약물운항 등
- 어선 안전저해 행위 등에 대한 보상심사 강화
 - 어선보험 면책비율 개정(최대20% → 최대40%) 및 면책사유 정비

3. 시행일 : 2025년 10월 01일

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6조 중 “손해에 대하여는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26조제10호 중 “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9조 또는 제40조

나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0조 또는 제31조

제126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보험금 지급신청 관계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

제127조제1항제1호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7조제3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(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며, 천재지변 등 예방조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가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8조 위반

나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1조 위반

제12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3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
1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4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2. 보험의 목적인 어선이 「어선법」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

⑤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4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
1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10조 또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4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
2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

제127조제6항(중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 단, 아래 호에서 정한 같은 항에서 중복 발생한 사유는 1개로 본다.

1. 제2항과 제3항이 각각 발생하여 병합되는 경우에는 20/100
2. 제2항부터 제4항이 각각 발생하여 2개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30/100
3. 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발생하여 2개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40/100
4. 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발생하여 3개 이상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50/100

제127조제7항(중전의 제5항)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”를 “제4항 제2호”로 한다.

제139조의12 중 “손해에 대하여는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139조의12제9호 중 “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”을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9조 또는 제40조

나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0조 또는 제31조

제139조의12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보험금 지급신청 관계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

제139조의13제1항제1호,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39조의13제3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(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며, 천재지변 등 예방조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)

가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8조 위반

나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1조 위반

제139조의13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3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
1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4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
2. 보험의 목적인 어선이 「어선법」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

⑤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4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
1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10조 또는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4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

2.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

제139조의13제6항(중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 단, 아래 호에서 정한 같은 항에서 중복 발생한 사유는 1개로 본다.

1. 제2항과 제3항이 각각 발생하여 병합되는 경우에는 20/100

2. 제2항부터 제4항이 각각 발생하여 2개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30/100

3. 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발생하여 2개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40/100

4. 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발생하여 3개 이상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50/100

제139조의13제7항(중전의 제5항)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8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”를 “제4항 제2호”로 한다.

부 칙(2025. 10)

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202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제126조, 제127조, 제139조의12, 제139조의13은 시행일 이후에 가입한 계약부터 적용하고, 시행일 전에 가입한 계약은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규약 일부개정(안)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이유
<p>제126조 (절대적 면책사유) 중앙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<u>손해에 대하여는</u>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</p> <p>1 ~ 9. (생략)</p> <p>10. <u>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</u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11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26조 (절대적 면책사유) ----- <u>경우에는</u> ----- -----</p> <p>1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----- -----</p> <p>가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9조 또는 제40조 나.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0조 또는 제31조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보험금 지급신청 관계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</u></p>	<p>법명 및 낙시어선 개정 사항 반영</p> <p>위법행위 면책 강화</p>
<p>제127조 (상대적 면책사유)</p> <p>① (생략)</p> <p>1. <u>보험금 지급신청 관계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</u></p> <p>2.~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4. <u>낙시 관련 운항 중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에 의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고시한 낙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</u></p> <p>3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어선이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출항하여 발생한 손해</u></p> <p><신설></p>	<p>제127조 (상대적 면책사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삭제>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삭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삭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삭제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삭제></p> <p>6. <u>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(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며, 천재지변 등 예방조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)</u> 가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8조 위반 나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1조 위반</p>	<p>면책기준 강화 정비</p> <p>안전저해 행위 상대적면책기준 신설</p>

<신 설>

<신 설>

④ 중앙회는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의 2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
⑤ 5톤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출어이외에 조업준비 등을 위해 항내에서 운항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중앙회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검사기준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였거나 계선신고한 경우에는 보험금 차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139조의12 (절대적 면책사유)

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
- 1. ~ 8. (생략)
- 9. 해사안전법 제41조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한

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3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
- 1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4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
- 2. 보험의 목적인 어선이 「어선법」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

⑤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4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
- 1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10조 또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4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
- 2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

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 단, 아래 호에서 정한 같은 항내에서 중복 발생한 사유는 1개로 본다.

- 1. 제2항과 제3항이 각각 발생하여 병합되는 경우에는 20/100
- 2. 제2항부터 제4항이 각각 발생하여 2개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30/100
- 3. 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발생하여 2개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40/100
- 4. 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발생하여 3개 이상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50/100

⑦ <삭 제>

⑧ ----- 제4항 제2호-----

제139조의12 (절대적 면책사유)

----- 경우에는 -----

- 1. ~ 8. (현행과 같음)
- 9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-----

면책조항 병합기준 개정

안전운항 준수 강화

조문정비

법명 및 낚

<p>상태에서 발생한 손해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10. ~ 12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	<p>-----</p> <p>가.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39조 또는 제40조</p> <p>나.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0조 또는 제31조</p> <p>10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보험금 지급신청 관계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</p>	<p>시어선 개정 사항 반영</p> <p>위법행위 면책 강화</p>
<p>제139조의13 (상대적 면책사유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1. 보험금 지급신청 관계서류의 허위 및 증거의 위조 또는 변조</p> <p>2.~4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</p> <p>3. (생 략)</p> <p>4. 낙시 관련 운항 중 「낙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에 의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고시한 낙시어선 안전운항을 위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</p> <p>③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</p> <p>3. ~ 4. (생 략)</p> <p>5. 어선이 어선안전조업법 제10조를 위반하고 출항하여 발생한 손해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139조의13 (상대적 면책사유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삭 제>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삭 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삭 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삭 제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삭 제></p> <p>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(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며, 천재지변 등 예방조치가 불가능할 정도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)</p> <p>가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8조 위반</p> <p>나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1조 위반</p> <p>④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3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</p> <p>1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24조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</p> <p>2. 보험의 목적인 어선이 「어선법」에 따른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 중 발생한 손해</p> <p>⑤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험금의 40/100을 차</p>	<p>면책기준 강화 정비</p> <p>안전저해 행위 상대적면책기준 신설</p>

④ 중앙회는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의 20/1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

⑤ 출어 이외에 조업준비 등을 위해 항내에서 운항중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중앙회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검사기준일 전에 검사신청을 하였거나 계선신고한 경우에는 보험금 차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감하여 지급한다.

1.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10조 또는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4조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

2.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2까지 어느 하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

⑥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보험금에서 해당 비율을 차감하여 지급한다. 단, 아래 호에서 정한 같은 항내에서 중복 발생한 사유는 1개로 본다.

1. 제2항과 제3항이 각각 발생하여 병합되는 경우에는 20/100

2. 제2항부터 제4항이 각각 발생하여 2개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30/100

3. 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발생하여 2개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40/100

4. 제2항부터 제5항이 각각 발생하여 3개 이상이 병합되는 경우에는 50/100

⑦ <삭 제>

⑧ ----- 제4항 제2호-----

면책조항 병합기준 개정

안전운항 준수 강화

조문정비